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남부순환로(개봉1동사거리주변)평탄화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21.03.26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임장경, 이상현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매봉초 추진기지 가시설 주변은 현재 로프와 그물망이 추락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난간 설치를 하기 바람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큰굴다리 비개착 도달기지과 오류IC 단차구간은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므로 통로 확보하기 바람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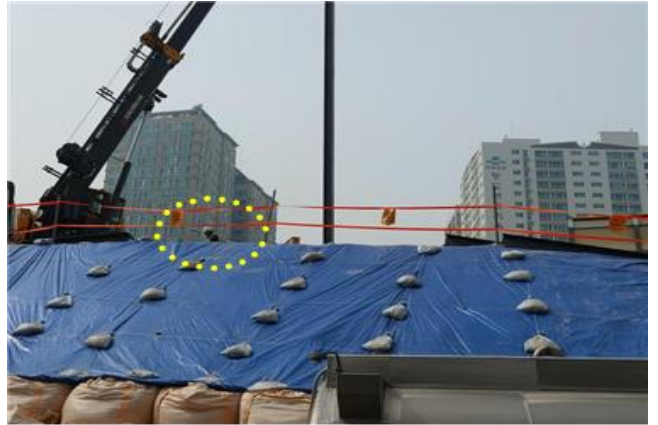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유압기 전기 충전부는 보호조치 하기 바람, 위험 기계기구는 반입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그 결과를 부착하기 바람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추진기지에서 사용중인 카고크레인은 전방작업 시 전도위험이 있으므로 후방작업을 하기 바람
정격하중,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하기 바람
- 큰굴다리 도달기 말뚝 천공작업구간은 장비의 중량물 작업시 주변에 근로자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 관리하기 바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3(이동식 크레인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4(중량물취급/기타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아파트 앞 하수박스 터파기 구간의 굴삭기는 아래 사항을 조치하기 바람
 - ① 후면 협착방지봉 설치
 - ② 사전에 승인된 장비만 투입하도록 하고 전면부에 장비실명제 부착
 - ③ 흙 해지방지 장치 설치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큰굴다리구간(신설) 종점부 상부구간에 H-파일 임시적재시 이중적재를 금지하고 자재주변에 접근금지펜스 등 안전조치 후 작업요망
- 유로폼 등 자재 적치시 전도위험이 없도록 차단 적치를 지양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오류IC고 성능개선 공사장에 간이물탱크와 분전함(콘센트)이 인접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어 분리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? 기구의 적정설치 등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위험물 보관소는 상부에 차양 덮개를 설치하고 외부 msds와 내부 보관물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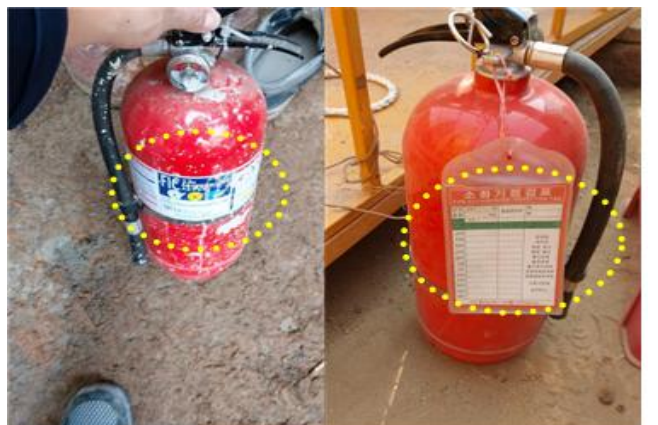
- 매봉초 추진기지 구간 정기점검이 누락된 소화기가 있으므로 관리하기 바람

- 가스용기는 작업중단시 밸브를 잠금하여 관리하고 미사용 가스용기는 위험물 보관소에 별도 보관하기 바람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? 024(위험물 보관소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(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? 0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현장에 보관 중인 파손, 불량자재(흙관)는 조치
요망

※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(건설사업관리 등의
시행)

